

보도시점

2024. 4. 30.(화) 08:30

배포

2023. 4. 30.(화) 08:30

“전기·수소 자동차등록증 도입 해야”

- 국민권익위, 전기·수소 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내연기관차와 별도로 자동차등록증 도입 ‘의견제시’

□ 국민권익위원회(유철환 위원장, 이하 국민권익위)는 전기·수소 자동차의 제원*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 서식을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의견제시 했다.

* 자동차의 형식승인번호, 크기, 총중량, 배기량, 출력, 승차정원 등을 표시

□ 현재 자동차등록증 서식은 내연기관차를 기준(배기량 cc, 정격출력 rpm 등)으로 작성되어, 전기·수소 자동차 소유자들이 본인 차량의 제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식 내 별도 표기되어있는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.

□ 국민권익위는 전기·수소 자동차 보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관련 민원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, 국토교통부에 전기·수소 자동차에 맞는 별도 서식을 마련하도록 했다.

□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“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기존 행정규정은 신속하게 개정하여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적극행정국민신청팀	책임자	팀 장	황준환 (044-200-7214)
		담당자	조사관	한수현 (044-200-7213)

■ 자동차등록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1. 5. 27.>

(앞쪽)

자동차등록증			
제 호		최초등록일 : 년 월 일	
① 자동차등록번호		② 차 종	③ 용 도
④ 차 명		⑤ 형식 및 연식 (모델연도)	
⑥ 차 대 번 호		⑦ 원동기형식	
⑧ 사 용 본 거 지			
소유자	⑨ 성명(명칭)	⑩ 주민(법인)등록 번호	
	⑪ 주 소		
<p>「자동차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</p> <p>※ 유의사항 :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 또는 수소인 자동차의 경우 ⑦번란의 '원동기형식' 은 '구동전동기형식' 을 말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			
등록관청명			작 인

1. 제 원			
⑫ 제원관리번호 (형식승인번호)			
⑬ 길이	mm	⑭ 너비	mm
⑮ 높이	mm	⑯ 총중량	kg
⑰ 배기량	cc	⑱ 정격출력	Ps/rpm
⑲ 승차정원	명	⑳ 최대적재량	kg
㉑ 기동수	기동	㉒ 연료의 종류	(연비 : km/L)
<p>유의사항 :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"정격출력(ps/rpm)"은 "구동전동기 정격출력/회전수(kW/rpm)"를, "기동수/배기량(cc)"은 "구동축전지 정격전압/용량(V/Ah)"을 말하며, "연료소비율(km/ℓ)"은 "연료소비율(km/kWh)"을 말합니다. 사용연료의 종류가 수소인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 "정격출력(ps/rpm)"은 "구동전동기 정격출력/회전수(kW/rpm)"를, "기동수/배기량(cc)"은 "연료전지 최고출력(kW)"을 말하며, "연료소비율(km/ℓ)"은 연료소비율(km/kg)"을 말합니다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제2호의 특수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기 위해 허용되는 최대수직하중을 말하며 견인능력과는 무관합니다.</p>			
2. 등록번호판 교부 및 봉인			
㉓ 구분	㉔ 번호판발급일	㉕ 봉인일	㉖ 발급대행자 확인
3. 저장권등록사실(저당권등록의 내용은 자동차등록 원부(을)를 열람·확인하시기 바랍니다)			
㉗ 구분(설정 또는 말소)		㉘ 일 자	

4. 검사유효기간					
㉙ 연월일 부터	㉚ 연월일 까지	㉛ 검사시 행장소	㉜ 주행거 리	㉝ 검사책 임자확인	㉞ 검사 구분
<p>주의사항 : ㉙항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.</p> <p>비 고</p> <p>- 자동차 출고(취득)가격(부가가치세 제외):</p>					